

〈서 면 답 변〉

○ 김주삼 위원('99 행정사무감사 보사환경위원회 '99. 11. 26)

〈질 의〉

- 위원님께서도 현재 우리 도에서 추진중인 쓰레기처리 정책에 대한 문제점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지적하시면서
 - 배출가스 제거 등 유해물질의 제재기준이 없는 소형소각로에 대한 대책
 - 소각장용량의 과대예상에 따른 적정규모의 시설설치를 위한 소각정책 재검토 방안
 - 소각장 주변의 토양에 대하여 수은, 납 등 중금속 함유에 대한 오염조사와
 - 소각재의 안전한 처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열분해용융시설 등을 전문가들과 조속히 협의하고
 - 광명시 소각장에 설치되어 시험가동 중에 있는 소각재 처리시설의 중간시험가동실태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 변〉

-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시간당 100kg미만인 소형소각시설은 그 동안 대기배출시설에 해당이 안 되어 각종 오염물질의 배출검사에 대한 제재가 안 되었으나 금년 10월 16일부터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되어 시간당 25kg미만인 시설은 설치를 금지토록 하고 시간당 25kg이상인 시설은 대기배출시설로 설치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앞으로 이들 소형소각시설에 대한 관리가 획기적으로 강화되었습니다.
- 또한 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시·군에서 추진중인 대형소각시설은 그 동안 주민의 의식수준 향상과 재활용의 생활화로 일부 자체발생하는 생활폐기물에 비하여 용량이 다소 과대한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 도에서는 '98년부터 인접 시·군의 쓰레기를 반입 처리하는 광역화로 추진하여 타 시·군의 쓰레기도 처리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으나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 지난 '97년 적정규모의 소각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행정절차 이행 중인 시·군에 대하여 환경부와 소각시설규모 적정화를 위해 협의한 바 있고 앞으로 시·군별 쓰

레기발생량 등을 재검토하여 신설계획으로 있는 지역에 대하여는 적정규모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아울러 현재 운영 중인 50 t 이상의 소각장(성남, 안양, 부천, 고양, 용인)에 대한 인접지역의 토양오염 여부에 대하여는 시·군의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검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 소각재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열분해용융시설 등의 도입방안을 검토하기 위하여 2000년도 특수시책으로 채택하여 이에 대한 소각재처리 타당성조사 용역을 실시하기 위하여 예산을 검토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 또한 광명소각장에 수원대학교와 로드인더스트리에서 전기저항에 의한 고온 열분해용융방식으로 소각재 용융시험시설을 설치하여 금년 8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1차 시험운전을 마치고 용융슬러그 검사결과 기준치 이내로 검출되었으나 전기저항방식 소각재 용융시설의 용융시간 과다(6시간)로 재설계 제작하여 제2차 시험운전을 금년 12월 1일부터 실시계획임을 보고드리며

※ 1차 시험운전결과

- Cu(구리) : 0.17mg/ℓ (기준 3mg/ℓ), 납, 크롬, 카드뮴, 수은, 비소 등 - 불검출

- 아울러 고양시 소각장에서 발생하는 소각재는 강원도 원주시에 위치한 상지대학교에서 플라즈마를 이용한 용융시설에 의해 처리방법을 시험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규모 500kg/시간)

<질 의>

- 도청 및 산하 시·군에 많은 정수기와 생수기를 설치하여 수돗물에 대한 불신을 증폭시키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 변>

- 도청 및 산하 시·군에 설치된 생수기 및 정수기는 수돗물의 불신에서 설치된 것은 아니며 설치된 정수기 및 생수기의 기능은 물맛을 좋게 하기 위한 냉·온수기 기능을 우선으로 생각하여 설치된 것이며 민원행정서비스 차원에서 설치되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주삼, 이상락, 김도삼, 나진택 위원('99 행정사무감사 보사환경위원회 '99. 11. 26)

〈질 의〉

- 미국 아미티 유니신사의 플랜트가 유치되면 국내기술 파산우려, 기술의 안정성 문제 등 재검토가 필요하고 기 설치된 기기의 효과성 여부에 대한 조사방안과 부천시의 음식물쓰레기 외자유치 설명회 결과 시민반응 및 설명내용이 무엇인지
- 소각장 설치 시 군에서 음식물쓰레기 소각률을 낮추기 위해 시·군별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을 설치한다면 외자유치 광역추진사업과 중복투자 우려에 대하여 검토용의와 음식물쓰레기의 가연성 분류에 대한 담당국장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 변〉

-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음식물쓰레기는 2000년 7월부터 수도권매립지 제3공구와 2005년부터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군지역을 제외한 모든 매립지에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우리 도에서는 음식물쓰레기를 최대한 자원화하는 등 환경친화적 방법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외국의 신기술을 유치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Unisyn사 제안〉

- 위 치 : 부천시 대장동 608번지 일원
- 부지면적 : 지상 6,370㎡, wlgk 38,700㎡
- 시설용량 : 600 t /일(혐기성 연료화시설)
- 투자금액 : 5,000만US \$ (600억원)
- 처 리 비 : 톤당 38US \$ 내외(자치단체 부담)
- 운 영 : 25년간 운영후 부천시에 기부채납

〈답 변〉

- 유니슨 플랜트에 반입되는 음식물쓰레기는 자치단체, 농장 등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원화시스템에 보내지는 음식물쓰레기를 제외한 매립, 소각 또한 혼합배출되는 음식물쓰레기를 수집·운반해서 처리할 계획이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께서 걱정하고 계시는 국내기술 파산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기술 안정성 부분에 있어서는 지난 9. 8일 경기개발연구원에 용역의뢰한 결과 악취저감시설(바이오필터, 에어커튼, 음압장치설치 등), 염분농도 1%이하 생산, 혼합비닐제거 등과 아울러 침출수를 정화처리토록 제안되었기 때문에 금년 12월 중 계약체결되면 외국유수의 엔지니어링 분야에서 심도있게 다루도록 할 것입니다.
- 또한 음식물쓰레기 퇴비화에 대한 국내기술 조사방안의 일환으로 금년 추경예산에 위원님의 배려로 용역비 5,000만원을 계상한 바 있습니다.
- 이를 토대로 12월말까지 조사·연구에 관한 용역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해서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토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 지난 11월 23일 부천시청 대강당에서 개최한 음식물쓰레기 외자유치 설명회는 유니슨사, 경기개발연구원, 우리 도가 투자기술설명회를 비롯해 경제성, 교통의 타당성과 계약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었고
- 현재 우리 도의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은 2,012 t /일로써 소각이 차지하는 비율은 383 t /일 19%에 해당됩니다.

〈처 리 현 황〉

- 발생량 : 2,012 t /일(총 폐기물 6,670 t /일의 30%)
 - 매 립 : 802 t /일(40%)
 - 소 각 : 383 t /일(19%)
 - 자원화 : 827 t /일(41%)
 - 사료 531 t /일, 퇴비 295 t /일

- 소각률을 낮추기 위해 자치단체별로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설치를 계속 추진하려고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만 유니슨 플랜트 외자유치 계획이 가시화되면서 금년도 사업(수원, 안양 등 6개 시·군)에 대해서 중복투자를 피하기 위하여 유보하

고 있는 실정입니다.

- 쓰레기 소각시 음식물쓰레기에 의한 불완전연소로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현실적 여건을 고려해 신중히 검토하여 최대한 자원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 이 밖에 음식물쓰레기의 가연성 분류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 폐기물관리법 제4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4조 규정에 의거 「연간폐기물처리 등의 실적보고」에 의하면 음식물쓰레기는 생활쓰레기로 분류되고 생활쓰레기 중 ①음식물, 채소류, 종이류, 나무류 등은 가연성쓰레기로 ②연탄재, 금속 및 초자류 등은 불연성쓰레기로 ③나머지는 재활용품으로 분류하여 「전국폐기물발생 및 처리현황」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음식물쓰레기를 가연성쓰레기로 분류하고 소각처리함으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자원화할 수 있는 음식물쓰레기가 비효율적으로 처리되고 있다는 점에 대하여 동감을 표시합니다.
 - 앞으로 음식물쓰레기가 최대한 자원화를 도모코자하는 정책적 배려의 뒷받침을 위해서라도 음식물쓰레기가 가연성 분류에서 제외되도록 환경부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최흥식 위원('99행정사무감사 보사환경위원회 '99. 11. 26)

〈질 의〉

- 우리 도내 정수장은 60여개소로 시·군별 정수장 운영실태 문제점 및 향후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 변〉

- 우리 도내 정수장은 총 69개소로 그 중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정수장은 7개소, 인천에서 1개소를 관리하고 있어 우리 도 시·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정수장은 61개소로 그 중 유희시설 8개소이며 53개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 현재 운영 중인 정수장 중 산재되어 있는 소규모 정수장은 전문인력 부족 및 장비, 시설노후 등의 문제가 있어 지속적인 시설개선과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전문인력양성을 위하여 수도 전문교육기관인 한국수자원공사에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 산재되어 있는 정수장에 대하여는 점차 통합정수장으로 운영토록 하여 원가절감 및 맑은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질 의>

- 위원님께서도 팔당상수원 지역 시·군의 음식물쓰레기 처리실태와 관련하여 '99년도의 처리실적과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 변>

- 팔당상류 7개 시·군의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은 '98년말 기준 235 t이며 '99. 11 현재 자원화량은 사료 89 t, 퇴비가 55 t 등 총 144 t (61%)이 재활용 처리되고 있습니다.

발 생 량	재 활 용 량			재 활용 률
	계	사 료	퇴 비	
235.6 t /일	144 t /일	89	55	61%

- 향후 우리 도에서는 팔당상수원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음식물쓰레기 줄이기를 적극 추진함과 아울러 가축농가 연계처리, 사료화, 퇴비화 등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질 의>

- 팔당상수원의 녹조발생현황, 수생식물에 의한 질소·인 제거 실태와 수초제거 실적과 조류발생 예보시 관계기관 공동대응 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 변>

- 팔당상수원의 녹조발생은 매년 6월이후 수온인 20℃ 이상으로 상승할 경우 발생하는데 주요 발생지점은 경안천 하류 광동교 지점에서 발생하는데 녹조발생 원인으로서는 수온상승, 수역의정체, 영양염류의 증가를 들 수 있습니다.
- 수질정화를 목적으로 수생식물을 별도 재배한 곳은 경안천 하류지역을 위주로 수초를 제거하는데 수초제거선 3척과 운반선 1척을 이용 6~11월 중에 걸쳐 금년도 654 t 의 수초를 제거하였으며
- 조류예보제는 주의보, 경보, 대발생으로 구분되는데
- 조류주의보는 클로로필 에이(chl-a) 농도 15~25mg/m³와 남조류 세포수 500~5,000 세포/ml 이상일 경우 발령되며 전년도에 이어 금년도에도 조류예보제 발생건수는 한 건도 없었으며 조류주의보 등 예보가 발령되면 유관기관에 신속히 전파하여 주변오염원에 대한 단속강화, 환경기초시설의 운영철저 등을 기하고 조류대발생시에는 정수장의 전염소처리, 활성탄처리의 병행 실시 등을 실시하게 됩니다.

<질 의>

- 오존오염의 심각성을 말씀하시면서 금년들어 오존주의보가 급격히 증가하는 사유와 오존저감을 위한 도의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 변>

- 우리 도는 수도권이라는 지역적 특성을 갖고 있어 산업화, 도시화의 급속된 진전과 함께 자동차 운행대수가 눈에 띄게 증가되고 있어 오존을 생산시키는 대기오염물질이 많이 배출됨에 따라 그 오염정도가 날로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자동차등록대수 : '98년 7월 1,953,986대, '99년 7월 2,151,786대(197,800대 증가)
- 특히 금년에는 이상고온 현상과 대기가 안정되어 오염물질을 정체시킴으로써 오존농도가 높아져 지난 해에 비하여 오존주의보 발령횟수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 '98년도 : 6개지역 16회(6일간)

- '99년도 : 7개 지역 22회(13일간)

-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우리 도에서는 오존저감대책을 위하여 오존생성 요인물질인 질소산화물(NO_x)과 탄화수소(HC) 등을 줄이기 위하여 운행자동차에 대하여 상설 및 수시단속반을 편성하여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대기오염을 현저히 줄일 수 있도록 청정연료를 사용하는 저공해차량(NGV버스 등)운행 방안을 강구하는 등 오존발생 저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는 휘발성유기화합물질(VOC)배출시설의 방지시설설치 의무화와 노후화된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을 개선 유도하여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오존생성물질들도 사전에 억제토록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 '98년 자동차배출가스 단속실적 : 431,338대 점검, 5,441대 적발

- '99년 상반기까지 자동차배출가스 단속실적 : 179,451대 점검, 1,982대 적발

※ NGV : Natural Gas Vehicle (저공해차량)

- 아울러 현재 연구용역 중에 있는 「21C 경기대기보전실천계획」의 결과에 따라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저감대책을 수립 추진하여 오존발생을 줄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대기오염실천계획연구용역 : '98. 3~'99. 12(경기개발연구원)

〈질 의〉

- 일본 가나가와현 등 자매결연 지역과 환경분야 국제협력을 추진한 성과와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 변〉

- 우리 도에서는 일본 가나가와현 등 14개 국가 16개 도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습니다만 일본 가나가와현, 중국 요녕성 등 3개 도시와는 2년마다 3개국씩 번갈아가며 우호 교류회의를 개최하기로 협약을 맺었습니다.

- 지난 해 9월 우리 도가 주관하여 3개국 지사·성장이 참석한 가운데 제2회 우호교류회를 실시하여 공동연구사업과 환경전문기술 상호교류사업을 추진키로 협의하여

- 금번 7월부터 2개월간 우리 도 공무원을 일본 가나가와현에 파견하여 호소부영양화 방지대책에 관하여 공동연구사업을 추진한 바 있고 다음주 월요일부터 일본의 환경전문가를 우리 도에 초청하여 팔당특별대책지역내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운영에 대한 기술자문을 받을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 김장훈 위원('99 행정사무감사 보사환경위원회 '99. 11. 26)

<질 의>

- 민원신고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산업단지내 배출업소의 지도·단속권을 지자체가 공유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것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 경기도에 지도·단속권이 있는 산업단지외 1~2종 사업장의 경우 민원신고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 변>

- '99. 11월 현재 도내에는 총 5,300여개의 대기배출업소가 있으며 이중 1~2종 사업장 230여개소를 도에서 직접관장하고 있습니다.

※ 도본청 : 175개소, 북부출장소 : 58개소

- 원칙적으로 1~2종 사업장에 대한 인·허가 및 지도·단속을 비롯 각종 민원이 발생하였을 경우 한수이남은 도에서, 한수이북은 북부출장소에서 직접 현지조사 및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 다만 무단방류 등 긴급한 사안이 발생 즉시 현장을 출동하여 가검물 채취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관할 시·군에서 신속히 현장에 출동하여 조치를 취한 후 그 처리결과를 도에 보고토록 하고 있습니다.

<질 의>

- 경기지역 환경기술개발센터 설립과 관련 시화·안산지역의 공해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하시면서 센터입지에 대한 도의 입장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 변〉

- 경기지역 환경기술개발센터는 주관대학을 중심으로 행정기관, 기업체 등 지역의 환경연구 역량을 결집하여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설치하는 것으로서
- 저희 도에서는 5개 대학을 주관대학 후보로 선정, 경인지방 환경청에 추천하였고 경인청에서는 대학교수 등 전문가로 심사위원회를 구성, 지역환경문제의 심각성, 연구능력 및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주관대학을 결정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 우리 도에서는 심사위원회에서 심의 선정된 주관대학을 중심으로 각 대학 및 연구소 등의 참여아래 컨소시엄을 구성, 운영하여 경기도 환경문제를 순차적으로 해결할 계획입니다.
- 5개 추진 대학 중 어느 대학이 주관대학으로 선정되어도 시화·반월공단의 대기오염문제는 최우선 연구과제로 선정 해결해 나갈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질 의〉

- 봄철 황사로 인하여 환경문제가 대두되고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경기도 전체의 황사에 따른 오염도 검사를 하고 있는지와 황사주의보를 실시할 의향은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 변〉

- 황사는 보통 우리나라에서는 4월 중순부터 나타나서 5월에 간헐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황사발생시 총먼지(TSP) 농도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급격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 황사발생은 우리나라 전국적인 현상으로 오염도 검사는 중앙부처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우리 도 자체적으로는 별도로 황사에 대한 오염도 검사는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 그러나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는 보건환경연구원과 협의하여 황사현상에

대비하여 우리 도 자체적으로 오염도 검사 실시를 검토하는 등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 아울러 황사주의보 실시에 대하여는 중앙부처와 수도권 지역인 인근 서울시 및 인천시와 협의하여 공동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질 의〉

- 경인지방환경관리청의 소재가 인천으로 이전됨에 따라 행정력 낭비 등 부담함을 지적하시면서 행정수요 및 민원발생 등이 많은 안산지역으로 다시 환원시킬 의지가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 변〉

-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정부가 환경부 조직개편 과정에서 한강유역관리청을 신설하여 우리 도 하남시에 두고 안산시에 위치하고 있던 한강환경관리청을 인천 지방환경관리청과 통합하여 경인지방환경관리청으로 개편하면서 인천시에 두기로 결정함에 따라
- 그 동안 우리 도에서는 이에 따른 부담함을 주장하며 행정기관의 설치는 그 수요의 중심지에 세워져야 한다는 입지선정의 원칙을 설명하면서 경인지방환경관리청의 위치를 안산시에 있는 종전 한강환경관리청 자리에 환원될 수 있도록 도지사 지휘보고 및 지역 국회의원 등을 통하여 행정자치부, 환경부 등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 앞으로 지속적으로 환경행정수요가 많고 환경문제가 심각한 안산지역으로 경인지방환경관리청이 환원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질 의〉

- 오수정화시설 지원사업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말씀하시면서 지원사유를 물으셨습니다.

<답 변>

- 팔당상수원지역의 기존 음식·숙박시설에 설치된 정화조는 오수를 제외한 분뇨처리를 위한 단독정화조로서 처리효율이 매우 낮아 팔당상수원의 수질오염을 가중시켜왔습니다.

- 정부에서는 '97. 3. 7 오수와 분뇨를 병합처리할 수 있는 합병정화조 도입을 법제화하고 기존의 단독정화조를 BOD, SS 각 20ppm이하의 처리효율이 좋은 합병정화조를 교체하기 위하여 국비지원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 국비 50%, 도비25%, 시·군비 25%

- 기존 건물의 단독정화조는 당시 법령에 의해 적법한 시설이므로 이를 교체하기 위해서는 국비지원이 필요한 사안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 의>

- 경기도환경정책 중기종합계획 수정계획 수립시 '97년도와 '98년도 추진성과에 대한 분석결과와 평가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답 변>

- 중기종합계획 1~2년차인 '97년도 '98년도 주요 추진성과를 간략히 보고드리면
 - 「경기도환경기본조례」 제정('97. 12. 31)
 - 경기개발연구원 부설 수질환경연구소 설립('97. 12. 19)
 - 다양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
 - 경기의제 21 추진협의회를 구성
 - 도민, 기업, 행정이 함께 참여하여 경기도 지역특성에 맞는 「푸른경기21」 추진 기반
 - 특히 팔당상수원의 1급수를 위한 제도적 기반인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의 제정에 우리 도가 주도적으로 참여한 사례 등을 들수 있음
 - 이 밖에도 대기오염자동측정망을 14개 시·군 25개소로 확대하였으며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의 수립 등을 통해 쾌적한 환경조성에 노력하였으며

- 쓰레기실명제를 17개 시·군에서 24개 시·군으로 확대하고 폐기물 재활용 및 위생처리시설의 확대와 팔당수계 환경기초시설 72개소 설치 운영 및 맑은물 공급과 상수도시설 확충에 중점을 두어 추진한 바 있습니다.
- '97~'98년도 분야별 상세한 평가자료는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 서면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 앞으로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21세기 선진환경 기반을 구축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질 의>

- '98. 9. 14일자로 환경정책과 신설이후 경기도의 변화된 환경시책 내용과
- 2차 조직개편시 환경정책에 비중을 두지 않고 환경정책과를 개편한 이유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 변>

-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대의 변화에 따라 환경에 대한 중요성이 더 한층 높아지면서 지난 해 9월 14일자로 환경정책과를 신설하였습니다.
- 환경정책과가 신설된 이후 주민·단체·행정기관이 파트너쉽을 구성하여 경기환경의 새로운 이정표가 되는 「푸른경기21」과 「경기환경헌장」을 대외적으로 선포하였으며
- 최근의 환경정책과 사회적·경제적 여건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해 나가고자 지난 '97년도에 작성되었던 「경기도환경정책 중기종합계획」을 금년도에 수정·보완하여 작성한 바 있습니다.
- 또한 환경정책 수립과정에 도민참여를 확대하여 투명한 정책결정을 하고자 정책토론회, 시민공청회, 환경정책워크숍, 간담회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21세기 NGO시대를 대비하여 민간단체의 참여를 확대해 나가고자 내년부터 「환경보전기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 위원님께서 2차 조직개편이 환경정책과의 비중을 염두해 두지 않고 인원을 조정했다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기존의 정책개발담당과 정책과제팀을 통합하여 조직이 일부 축소된 감은 있습니다만
- 환경보전과의 자연생태담당을 보강하면서 농정국 산림과 「수렵에 관한 사무」와 함께 인원이 환경정책과로 이관되어 당초 정원보다 2명이 더 보강되었습니다.
- 따라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가 현실로 나타나는 일이 없도록 기능활성화하여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질 의〉

- 환경보전자문위원회의 역할과 그간 회의개최 실적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 변〉

- 환경보전자문위원회의 위원은 총 10명으로 당연직 공무원 3명과 환경보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환경분야의 전문가로 7명을 위촉하였으며
- 주요기능은 환경보전기본대책에 따른 도 기본계획수립에 관한 사항과 환경기준사항 심의 특별대책지역에 관한 종합특별대책수립 및 기타 도지사가 부의하는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 그간 자문위원회 운영실적을 말씀드리면 '98년도에 “경기의제21”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및 “99 업무계획”에 대한 심의 등을 위하여 2회 개최하였으며
- 금년도에는 경기도자연환경보전조례(안)과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 및 생태계보전지역 관리기본계획 중간보고, 환경정책 중기종합계획 수정(안) 등 5건의 자문을 위

하여 지난 10월 개최한 바 있으며

- 앞으로 12월 중순에 생태계보전지역 관리기본계획 최종보고 및 특별대책지역내 특정수질유해물질의 입지 타당성검토 등에 관한 안건 자문을 위하여 개최할 예정임을 보고드립니다.

- 이주석 위원('99 행정사무감사 보사환경위원회 '99. 11. 26)

〈질 의〉

- '98, '99숙박업소 등 점검현황 중 과태료부과 금액과 과태료와 고발의 차이점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 변〉

- '98, '99년 숙박업소 등 점검현황 중 팔당 특별대책지역의 과태료 부과 금액은 현재 파악 중에 있으며 자료가 준비되는 즉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 과태료와 고발의 차이점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과태료는 행정벌로써 시설점검시 위반사항에 대하여 부과하는 제재수단이며 고발은 형사벌로써 숙박시설 등에서 일정한 기준의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무단으로 숙박업소 등을 운영할 경우 관계당국에서 검찰에 고발하는 사안입니다.

〈질 의〉

- 도내 환경단체 현황과 예산이 지원된 단체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 변〉

- '97. 3. 7 사회단체신고에관한법률이 폐지되어 환경단체를 특별히 관리하는 사항은 없으나 시·군을 통하여 도내 환경단체 현황을 파악한 결과 '99년 5월 현재 75개 단체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 예산이 지원된 단체는 도단위 10개 단체로써 13개 사업은 5,900만원이 지원되었음을 보고드리며 세부현황은 추후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질 의〉

- 금년도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실적이 부진한 이유와 체납액에 대한 징수대책이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답 변〉

- 금년도 9월말 현재 시설물분과 자동차분을 포함한 환경개선부담금은 477억 4,400만원을 부과하여 343억 5,100만원을 징수함으로써 72%의 징수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 이렇게 징수실적이 부진한 이유는 IMF여파로 인한 중소기업체의 경영악화와 실업자 증가로 인한 수입감소 그리고 수해 등이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12월 중에 체납액 일소기간 설정 및 장기체납자 특별관리 등을 통하여 징수율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 참고로 작년동기 징수율은 61%이며 연말 징수율은 81%임을 감안할 때 금년도 징수율은 이보다 훨씬 상회되리라 생각합니다.

〈질 의〉

- 부도사업장 방치폐기물 행정대집행 처리비용 지원비율이 현행 도비 50%, 시·군비 50%로 알고 있는데 재정이 열악한 시·군에 있어서는 50%의 시·군비 부담이 재정악화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지원비율을 확대시킬 용의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 변〉

-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사업장 폐기물의 처리책무는 1차적으로 사업주에게 있고 지도·감독 권한은 시장·군수에게 있습니다.

- 부도사업장의 경우 이미 사업주의 처리능력 상실로 인수자 또는 인수불능시에는 부득이 해당 시·군의 지방자치단체장이 폐기물관리법 규정에 의거 방치폐기물을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경기도보조금의예산및관리조례」에서 도비보조사업인 부도사업장 방치폐기물 처리비용 지원비율은 명시되지 않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업장폐기물의 지도·감독 권한이 시장·군수에게 있는 점과 시·군 재정의 열악한 점, 청소장비보강 설치사업 지원비율 등을 감안하여 도비 30%, 시·군비 70%로 지원비율을 책정하고 남양주시 신양제지의 경우 이를 지난 제2회 추경예산에 도비 2억원을 반영하여 지원한 바 있습니다.
- 우리 도에서는 부도사업장 방치폐기물 처리를 위해 '98. 5. 14부터 '99. 6. 1까지 4회에 걸쳐 방치폐기물 처리비용의 80%이상을 국비가 지원되도록 건의한 바 있으나 국가재정 여건상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 환경부에서는 현재 미처리되고 있는 전국의 부도사업장 방치폐기물을 처리코자 16억원을 2000년도 예산에 요구하고 재원부담비율은 국비 50%, 도비 20%, 시·군비 30%로 지원을 계획하고 있어 예산이 확정되면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상당부분 해소되리라 생각합니다.

<질 의>

- 경기북부의 환경문제는 소홀히 다루어지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의 경기북부 추가설치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 변>

- 환경부에서는 2002년까지 각 광역자치단체당 1개소의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를 설립할 계획으로 시책을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리며
- 우리 도에서는 금번 설치 예정인 경기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에 경기북부에 소재하고 있는 대진대학교를 협력대학으로 참여시켜 경기북부지역의 환경문제를 우선 해결해 나갈 예정입니다.

- 경기북부지역 추가 설치 필요성에 대하여는 우리 도에서도 공감하고 있으며 북부지청 개청 후에 북부지역의 종합적인 환경문제 및 지역역량 등을 가지고 환경부와 적극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 정수천 위원('99 행정사무감사 보사환경위원회 '99. 11. 26)

〈질 의〉

- 한국통신 오산전화국 야적장의 불법매립 및 안양시 학운공원 불법매립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폐기물 배출자와 지정폐기물 배출자에 대한 지도·단속 권한이 위임됐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는 사유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 변〉

- 경기도 임업시험장 주변의 오산시 수청동 342번지 산업폐기물 매립건은 한국통신 공사에서 '88년부터 폐유 및 건축폐기물 약 300 t 을 불법매립한 사항으로서 현재 수원지방검찰청에서 조사 중에 있으며
- 불법매립된 건축폐기물 300 t 은 처리완료하였고 폐유 오염토양에 대하여는 성분검사의뢰 중으로 오는 12월 14일까지 조치토록 오산시에서 명령하였습니다.
- 또한 안양시 학운공원 불법매립건은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 '92년 평촌신도시 조성 중 건축폐기물을 불법매립한 사항으로서 축구장확장공사 중 발견되어 토지개발공사에서 '99. 11. 24일부터 현재까지 약 100 t 의 건축폐기물을 처리하였으며 더 이상의 폐기물을 발견되지 않아 금일 「안양환경운동연합」 입회하에 처리종료 예정입니다.
- 아울러 폐기물 배출자 및 지정폐기물 배출자에 대한 지도·단속 권한위임에 있어서는
 - 폐기물배출 사업장에 대한 지도·단속 권한은 1963년 공해방지법 제정당시 해당시·군으로 위임된 사항이며
 - 카센타, 자동차정비업소 등 지정폐기물 소량배출사업장에 대한 지도·단속 권한은 '99. 2. 8일자 폐기물관리법 개정으로 인하여 '99. 11. 15일자로 시·군에 위임하였습니다.

- 현재 우리 도에서는 지난 10. 22일부터 검찰과 합동으로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른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시·군으로 하여금 지도·단속이 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으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폐기물배출 사업장이 도내 약 8천여개소에 이르고 있어 단속대상에 비하면 인력이 부족하여 제때에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도 없지 않습니다. 앞으로 취약시간대 및 상습위반 업소를 중심으로 불시에 집중적으로 단속을 벌여 배출업소 관리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 의>

- 「푸른경기21」 사업과 관련하여 지속개발위원회(CSD)를 설치한다고 하였는데 어떠한 방식으로 추진할 것인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 변>

- 유엔은 “의제21” 이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93경제사회이사회 산하에 지속개발위원회(CSD)를 설치하여 지구환경문제에 대한 총괄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지방의제에도 적용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현재 환경국에서 추진중인 「푸른경기21」 사업이 도정전반에 걸쳐 기본이념과 정책방향이 되도록 단체장 직속의 지속개발위원회(CSD) 설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 현재까지 구체적인 설치방법이 정하여 지지는 않았지만 지방의제21의 기본정신이 도정전반에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회를 각계각층의 대표·전문가로 구성할 계획으로 있으며 타 실·국의 각종 위원회에도 환경국장이 참여할 수 있도록하여 간접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것입니다.

<질 의>

- 환경 지원과 관련하여 지원사업 내용과 지원금액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 변>

- 우리 도는 비무장지대 생태보전, 팔당호 수질개선, 시화지구 대기질개선, 폐기물처리 등 각 지역마다 상이한 환경문제를 가지고 있어 전국 환경오염문제의 전시장이라고 표현해도 지나치지 않은 만큼 다양합니다.
- 이처럼 복잡하고 어려운 환경문제를 관 주도로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 환경단체의 참여를 적극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하여 여러 가지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99년도에는 10개 단체 13개 사업에 5,9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추후에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질 의>

- 환경농산물 유기농법 장려에 따른 시·군별로 인센티브지원 실적이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 변>

- 환경농산물의 유기농법에 대하여는 금년도까지 예산지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한 실적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 다만 팔당상수원 보호구역을 중심으로 4,972ha에 대하여 ha당 524천원을 보조하는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를 추진하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 농정국에서는 환경농업을 실천하는 우수 시·군의 작목반에 대하여 2000년도부터 잔류농약 간이검사기 공급, 환경농산물 전시판매장 설치, 친환경 농산물생산 작목반 브랜드개발지원 등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질 의>

- 위원님께서 여주·남양주 매립장 등 환경기초 시설이 소송제기 등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데
- 동 지역주민들을 위한 주민지원기금 조성이 어느 정도 되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 변〉

- 폐기물처리시설은 혐오시설로 인식되어 어느 지역에 설치하더라도 지역주민의 반대로 건설 추진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 여주군에서는 주민지원을 위하여 총 5년간 30억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98년도에 6억원을 확보하였으며 2000년도에 12억원을 반영하였고 향후 12억원을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며
- 또한 남양주시에서는 주변지역 주민을 위하여 주민지원사업비 60억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금년도에 10억원을 확보하였으며 행정소송의 결과에 따라 연차적으로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 앞으로도 지역주민들과의 지속적인 대화와 주민을 위한 인센티브 제공 등으로 민원을 최소화하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힘쓰겠습니다.

〈질 의〉

- 의왕 메디슨기지 기름유출, 평택 K-55부대 불법매립, 화성비행장 소음문제 등과 같은 주한미군 환경피해 관련하여 경기도가 환경권 확보를 위해 어떻게 노력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 변〉

-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 도는 휴전선을 접하고 있는 지리적 여건으로 동두천, 평택 등 여러 지역에 주한미군이 주둔하고 있습니다.
- 의왕시 백운산 메디슨기지 기름유출, 평택 K-55부대 건축폐기물 불법매립, 평택 K-6부대 기름유출, 화성군 우정면 매향리 비행사격장 소음공해 등 각종 환경관련 사고가 발생하여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으나 미군측에서 SOFA협정 규정을 이유로 소극적으로 대처하여 해결이 미뤄져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지난 10월 14일 환경부와 외교통상부에 환경오염과 관련하여 해결되지 않은 사항은 SOFA 환경분과위원회의 정식 안건으로 채택하여 민원

해결차원에서 조속한 시일내에 조치토록 협조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 앞으로 주한미군과 관련한 환경피해 사례가 발생할 경우 오염원인자 부담원칙을 엄격히 적용할 수 있도록 SOFA 협정에 구체적인 근거조문을 명시해 주도록 강력히 건의한 바 있습니다.
- 우리 도에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환경자주권이 확보될 수 있도록 관련 중앙부처에 강력히 그리고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질 의>

- 생태계의 보고인 DMZ인근의 수해복구를 위한 하천정비사업이 부직포 또는 콘크리트공법으로 진행되는 것은 환경의식이 결여된 것이라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향후 계획을 물으셨습니다.

<답 변>

- 지난 장마철 홍수로 파주시 관내 DMZ주변의 하천 유실과 자연환경의 피해는 물론 인적·물적 자원의 손실이 있었습니다.
- 유실된 하천에 대하여 파주시에서 부직포와 콘크리트로 벽면을 보호토록 하는 「페브릭폼」 공법을 이용한 응급 및 원상보수 작업한 사안으로
- 하천법에 의한 치수기능과 비무장지대내의 군사 전략적인 특수성이 있어 동 지역의 하천공사는 국방부 등과 협의하여 그 시공 방법을 결정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또한 「대성동 마을」 수해하천은 현재 북부출장소에서 하천복구공사설계 등을 용역 중에 있으므로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자연성을 최대한 살리는 하천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정수천, 김도삼 위원('99 행정사무감사 보사환경위원회 '99. 11. 26)

〈질 의〉

- 팔당특별대책에 대한 계획이 2005년까지 마무리되면 실제로 1급수 목표달성이 가능한지와
- NGO 민간단체가 참여하는 팔당호 수질감시체계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 변〉

- 팔당상수원의 1급수 개선을 위하여 중앙정부와 우리 도를 비롯한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전문가를 참여시켜 오염물질 발생량과 삭감계획을 과학적인 방법에 의하여 2005년까지 1급수 목표가 가능하다는 판단하에 이를 기초로 한 팔당특별대책을 마련하여 작년 11월 20일 물관리정책조정위원회에서 확정된 바 있습니다.
- 그리고 이 특별대책을 제도화하는 한강법을 우리 도의 주도적인 노력으로 지난 2월 8일 제정한 데 이어 물이용부담금 제도를 도입하여 양여금과 함께 총 4조 3,695억원을 마련해 환경기초시설을 대폭 확충하고 수변구역 255km²(우리 도는 195 km²)를 지정하는 한편 오염총량관리제 시행, 물관리전담기구인 한강유역환경관리청 설치 등 다양한 시책을 강구하여 2005년까지 팔당상수원의 1급수 목표달성이 가능하도록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 또한 한강법에 민간수질감시활동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팔당상류지역에 구성되어 있는 범대위 등 민간단체에 대하여 내년에는 10억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이들 민간단체들로 하여금 팔당호 수질감시와 수질보호 홍보활동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 정수천, 이상락, 김병갑 위원('99 행정사무감사 보사환경위원회 '99. 11. 26)

〈질 의〉

- 도내 농촌지역에 농약빈병 및 농촌폐비닐 수거율이 저조하여 이에 대한 대책과 농약빈병에 대한 수거 보상금을 인상할 수 없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 변>

- 농촌지역의 농약빈병 및 폐비닐 수거는 '87년부터 한국자원재생공사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광활한 농촌지역 여건을 감안하여 볼 때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였듯이 그렇게 흡족한 편이 아닌 것은 사실입니다.
- 앞으로 농약빈병 및 폐비닐 수거증대를 위하여 한국자원재생공사와 유기적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수거보상금 인상방안에 대하여도 환경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가겠습니다.
- 앞으로 공공근로자 활용방안도 관계부서와 협의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락 위원('99 행정사무감사 보사환경위원회 '99. 11. 26)

<질 의>

- 팔당상수원보호지역내 물이용부담금을 이용한 저공해세제, 비누공급 방안에 대한 그간 추진사항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답 변>

- 금년도 2월 8일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이 제정, 8월 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아직까지 저공해세제 및 비누공급 실적은 없으나
- 물이용부담금을 이용한 주민지원사업 등 수질개선사업 계획이 현재 한강유역관리청에서 대통령승인을 얻어 2000년도 사업계획 승인이 마무리 단계에 있어 주민지원사업 중 저공해세제 및 비누공급 사업이 포함되도록 행정지도하여 팔당호 수질개선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 의>

- 팔당수계 환경기초시설의 수질을 감시하고 단수 및 고발 등 권한을 부여하는 사항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답 변〉

- 한강수계법에 의거 팔당지역을 총괄 관리하는 한강유역환경관리청이 별도로 설치되어 수질조사와 수질오염 발생실태 단속 등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별도의 상설기구 설치가 현재로서는 제반여건상 어려움이 있음을 말씀드리며 현재 민간인이 참여하는 민간합동수질검사반을 편성 청미천 등 팔당수계 12개 지점에 대하여 수질감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질 의〉

- 용인시 죽전지구 택지개발지역의 아파트에서 공공하수처리시설은 설치하지 않고 자체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함으로써 무단방류시 탄천오염이 우려된다고 하시면서
- 자체 오수처리시설의 무단방류 근절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 변〉

- 용인시 택지개발 사업추진은 2006년 12. 31까지 3,716천㎡의 면적을 개발하게 되어 20,600여 세대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 한국토지개발공사로부터 용인시에 승인 신청되어 '99. 8. 20일 동 협의에 대하여는 용인시 23호선 국가지원지방도변에 하수종말처리장 1일 76,000 t 규모의 설치조건으로 의견을 송부하여 현재 건설교통부에 승인 중에 있으며
- 금년도 8월 9일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개정으로 오수처리시설에 대한 오수처리 전문관리업 제도가 도입되어 오수처리시설 유지관리가 가능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 의>

- 광주군의 광주하수처리장의 경우 '98년 11월 27,980 t/일이 유입되다가 12월에는 19,598 t으로 25%가 줄어든 사유와 이에 따른 조사내용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기 바람.
-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하수처리장을 가동하지 못하는 사유와 복정처리장으로 처리함에 따른 소요사업비 중 도비 및 성남시 자체부담 내역과 구미동하수처리장 재가동을 위한 경기도의 대안은?

<답 변>

- 광주처리장의 유입량이 줄어든 사유는 당초에 합류식 관거로 우수와 생활하수가 함께 유입되어 '96년부터 오·우수분류식 관거사업을 추진, '98. 12월에 공사가 완료됨에 따라 우수와 오수를 분리 차집하게 되어 하수유입량이 감소하게 되었으며 광주처리장의 부족한 시설용량은 금년 6월에 6,000 t을 증설하여 현재 1일 2만 5,000 t을 가동 중에 있어 발생하수를 전량 처리하고 있습니다.
-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수지하수처리장은 위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한국토지공사에서 택지개발사업을 하면서 자체 하수처리장을 추진 중에 지역주민의 반대로 '95년 11월에 공사가 중단되었습니다. 탄천수계 발생하수 3만 7,500 t의 처리를 위해 환경부, 성남시, 용인시, 토지공사가 '96. 12월 협약 체결하고 기 건설된 수지처리장은 성남시가 인수하고 성남시에 추가 설치하는 처리장 사업비 243억원을 도비 지원없이 토지공사에서 원인자부담금으로 부담키로 하고 현재 처리장과 차집관로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 따라서 수지처리장의 재가동은 성남시에서 인수 후 지역주민의 정서가 안정되면 주민, 시의회, 전문가로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주민설득 후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질 의>

- 환경기술지원반의 구체적인 지원활동 내역과 앞으로 시·군단위에서도 환경기술지원반을 운영토록 할 계획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답 변〉

- 환경기술지원반은 환경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배출업소를 대상으로 환경관리 기술을 지원하여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환경관리의 질 향상을 도모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 환경기술지원반은 사단법인 경기남부 및 경기북부 환경관리협의회가 주관이 되어 관내 3개 대학 교수 8명과 경험이 풍부한 22개 업체의 환경관리인으로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 그 동안 활동실적을 말씀드리면 섬유업체 21, 세차 7, 금속 22, 피혁 5, 도축 7, 식품 9, 기타 11 등 총 82개 업체에 폐수 및 대기배출시설 운영기술을 지원하였습니다.
- 앞으로 기술지원반의 운영성과가 좋은 점을 감안, 배출업소가 많은 시·군을 대상으로 환경기술지원반을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권장해 나가겠습니다.

〈질 의〉

- 금년도 128환경신문고의 운영내용 중 신고건수에 비하여 보상금 지급실적이 저조하다고 지적하시면서
- 환경신문고의 활성화를 위한 주민자율감시체계 정착 등 바람직한 방안을 물으셨습니다.

〈답 변〉

- 128환경신문고는 환경오염감시에 모든 도민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하여 폐수무단방류 등 각종 환경오염 행위를 목격하였을 경우 행정관청에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국번없이 128번 전화를 시·군에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 금년 상반기 환경오염 신고건수에 비해 보상금 지급건수는 520건에 768만원으로 미흡한 것은

- 31개 시·군 중에서 18개 시·군만 신고보상금 예산을 확보하였고 나머지 13개 시·군은 예산 미확보로 지급하지 못했으며
- 그리고 신고내용 중에서도 822건만이 위법사실로 확인되었고 나머지는 자동차 매연신고 등 개선권고 및 법령 미저촉 사항으로 조사되어 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는 사안이었습니다.
- 따라서 앞으로 전 시·군이 예산을 확보토록하여 신고에 따른 보상금 지급이 확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또한 환경신문고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분기별 1회이상 128전화 응대실태를 점검하여 수신자가 항상 친절하게 응대토록 하고 언론매체, 전광판, 반상회보 및 소식지 등 홍보매체를 통하여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토록 하겠으며
- 정보통신부에서 2000년 7월 개통예정으로 추진되는 지역번호 광역화사업이 실시되면 도 본청에 상황실을 설치하여 타 시·군 및 도로부터 신고되는 모든 민원을 직접 접수처리해 나가겠습니다.

<질 의>

- 우리 도내 먹는샘물 제조업체에 대한 수질검사 결과 9개 제품이 수질기준을 초과, 부적합제품으로 판정되어 도민건강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 부적합 먹는샘물에 대한 조치결과 및 대책과 업체명단을 공개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답 변>

- 우리 도내 먹는샘물 제조업체는 총 14개소가 있으며 '99년도에 실시한 먹는샘물의 수질검사 실적을 말씀드리면
- 먹는샘물 제조업체에서 생산하는 제품수 및 원수를 연2회이상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유통 중인 먹는샘물에 대하여는 대형백화점, 먹는샘물 대리점 등에서 반기 1회이상 수시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금년 도내 제조업소 기준초과 업소는 이동음료(주), 청주식품(주), 백룡음료(주), (주)산정음료, 한국청정음료(주), 여주음료 등 6개 업체가 9회에 걸쳐 초과되었으며 초과된 해당제품에 대하여는 경고 5건, 취수정지 및 영업정지 1월에서 3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처분 4건입니다.
- 향후 먹는샘물 제조업체는 물론 유통되는 먹는샘물 제품에 대한 정기·수시 수거 검사를 통하여 안전한 먹는샘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질 의>

- 오 폐수처리시설의 지도점검 결과 '98년과 '99년도의 과태료 부과금액이 위반 업소에 비해 차이가 나는데 그 원인과 건당 과태료 부과금액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 변>

-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과태료 부과금액이 '98년도와 '99년도가 차이나는 원인은 자료작성시 '98년도와 '99년도 숫자가 서로 바뀌었음을 말씀드리며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99년도가 '98년도보다 위반시설수가 적으면서도 부과금액이 많은 것은 '99. 2. 8부로 과태료 부과금액이 대폭 강화되었기 때문입니다.
- 또한 과태료 부과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고 있으며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인 경우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 이상락, 나진택 위원('99 행정사무감사 보사환경위원회 '99. 11. 26)

<질 의>

- 위원님께서 도내 백화점 등 대형매장에서 재활용제품 판매 매장설치 운영현황 및 취급품목이 어떤 것이 있는지와 아울러 공공기관의 재활용식품구매 실태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 변>

- 먼저 도내 백화점 등 대형매장에서 재활용제품 설치운영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
- 도내 32개 백화점에 재활용품 판매매장이 설치되어 있으며 이들 판매매장의 취급 품목으로는 주모 재생비누, 세제류, 재생화장지, 재생노트, 수세미 등 다수 취급하고 있으며 앞으로 이들 재활용품 사용활성화를 위한 정부차원의 지원은 물론 도민들에게 재활용제품 구매촉진에 대한 홍보와 계도를 위해 가일층 노력하겠습니다.
- 다음은 도청을 비롯한 공공기관의 재활용제품 구매실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정부는 재활용 제품에 대한 구매촉진을 위하여 재활용제품 의무구매품목을 '98. 12월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개정에 의거 31개 품목에서 85개 품목으로 확대 지정된 바 있습니다.
- 지난 '98년 우리 도 관내 공공기관의 재활용제품 구매실적은 재생화장지, 파일표지 등 총 14개 품목 2,697백만원으로서 재활용제품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은 94%에 달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앞으로도 재활용제품 구매촉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김병갑 위원('99 행정사무감사 보사환경위원회 '99. 11. 26)

<질 의>

- 농어촌지역에 식수로 사용하는 지하수의 수질이 음용으로 부적합할 경우 이에 대한 정기적 수질검사 실시여부 및 그 대책과
- 농업용 지하수의 폐공에 대한 조치 실적과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 변>

- 먼저 지하수를 이용하는 자는 지하수법 시행령 제29조제1항 및 지하수의수질보전 등에관한규칙 제7조에 의거 음용수·생활용수는 매년 1회, 공업용수는 2년에 1회, 농업용수는 3년에 1회의 주기로 지하수수질검사전문기관에 수질검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수질검사 결과 음용수로 부적합할 경우에는 현장 및 채수여건에 따라 재검사를 실시하고 재검사시에도 부적합할 경우에는 원상복구, 시설개선명령 또는 음용 이외 다른 용도로 변경하여 이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 최근 우리 도에서는 '99년도 상반기 지하수 측정망에 대한 오염도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조사대상 음용 지하수 63개소 중 11개소가 부적합판정을 받아 이중 5개소는 재검사 결과 적합판정, 5개소는 시설개선명령, 1개소는 원상복구토록 조치한 사실이 있습니다.
- 또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농업용 지하수 폐공은 물론 모든 폐공에 대하여는 현재 허가·신고대상은 원상복구 이행보증금 예치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경미한 시설과 무연고 폐공에 대해서는 2000년부터 환경부의 관리지침에 따라 관리해 나갈 계획이며, 참고로 '99. 9. 1일까지 3,501개소의 폐공을 원상복구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앞으로도 폐공에 대한 관리에 가일층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 의>

- 영세축산농가의 축산폐수 유출 고발현황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 변>

-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영세축산농가가 축산폐수를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방류할 경우에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규정에 의거 고발 등의 처벌을 받고 있습니다.
- 영세 축산농가의 축산폐수 무단유출에 대한 고발현황에 대하여는 현재까지 파악된 현황은 없습니다.
- 영세축산농가의 축산폐수 처리를 위하여 우리 도에서는 팔당특별대책지역에 대하

여 2000년도에 저장액비시설설치 등으로 양여금 11억 75백만원을 지원받아 ‘축산 분뇨처리시험사업’을 실시하여 영세축산농가에서 배출되는 축산폐수를 공공처리 시설로 유입처리할 계획입니다.

<질 의>

- 위원님께서 판매매장에서 1회용 봉투지급 등 1회용품 사용할 때 제재를 하는데 숙박업소 등에서 1회용품을 사용할 때 제재를 하고 있지 않아 법에 대한 형평이 맞지 않는데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 변>

- 1회용품 사용규제에 대하여 판매매장에서는 1회용 비닐봉투·쇼핑백 무상제공시 이행명령 및 과태료 처분을 실시하고 있으며
- 숙박업소에서도 1회용 면도기, 1회용 칫솔 등을 무상제공시 판매매장과 같이 행정 처분을 실시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질 의>

- 온천장 허가시 정화시설이 설치되어야 하는데 조사시 감시할 감시장치 설치 구상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 변>

- 온천탕의 오수정화시설 설치시 온천장의 입장객수 및 샤워 등으로 발생한 오수를 산정하여 적정한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온천장안 욕탕의 용수는 오수를 처리할 의무가 없습니다.

※ 환경부 질의회신 결과('94. 7. 4)

- 오수정화시설 설치시 부실운영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1일 처리용량이 50톤이상 일 경우에는 오수정화시설에 전원공급 및 사용량을 판독할 수 있는 ‘가동상태 확인기기’를 반드시 설치토록 규정되어 있고 관계 공무원 점검시 가동유무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 김도삼 위원('99 행정사무감사 보사환경위원회 '99. 11. 26)

〈질 의〉

- 위원님께서 수질, 폐기물, 대기 등에 대한 환경, 정책기본방향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 변〉

- 수질문제에 있어서는 모든 시민들이 마음놓고 수돗물을 마실 수 있도록 깨끗한 물을 충분히 공급하는데 두고 팔당상수원을 2005년까지 2조 180억원을 투자하여 1급수화할 계획이며
- 폐기물 문제는 발생량을 최소화하는데 그 근본목표를 두고 발생된 폐기물에 대하여는 최대한 재사용하거나 재활용률을 높여 나가는데 역점을 두며 그래도 불가피하게 버려지는 쓰레기는 소각 또는 매립하는 정책을 펴나가고 있으며 또한 음식물 쓰레기는 원천적으로 발생량을 최소화하고 부득이 발생된 쓰레기는 자원화해 나가는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 대기문제는 도민들이 맑고 깨끗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주는데 두고 각종 오염원을 저감시키며 자연환경을 보존하는데 환경업무의 기본방향을 두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질 의〉

- 위원님께서 인간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환경용량에 대하여 조사한 자료가 있는지와 조사가 없다면 앞으로 조사할 계획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답 변〉

-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환경용량에 대하여는 환경정책기본법에서 대기, 수질, 소음 등 기본적인 사항만 그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그밖에 구체적인 사항은 각 개별법에서 정하고 있으나 인간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환경용량에 대하여는 관계법에서 제시하거나 우리 도에서 조사한 바는 없습니다.

- 그러나 우리 도에서는 관계기관 및 외국의 우수 연구기관 등에 관련자료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자료가 확보되는 대로 위원님께 제공토록 하겠으며 앞으로의 환경용량 조사여부는 환경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질 의>

- 팔당상수원 수질개선과 관련하여 오염총량제를 시범 도입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물으셨습니다.

<답 변>

- 오염총량제는 금년 제정된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에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 오염총량제란 간단히 말해서 시장·군수가 해당지역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량을 계산해서 산정한 후 배출량을 줄여서 삭감하면 삭감한 만큼 개발을 허용하는 것으로써
- 이는 지금까지 팔당특별대책지역을 지정·고시하여 면적 및 배출허용기준으로 규제정책을 실시하였으나, 규제미만의 소규모 축산시설, 음식점, 숙박시설 등의 난개발을 초래하는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여 환경친화적으로 개발과 보전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 이에 따라 환경부에서 오염총량제를 준비하기 위하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 용역사업으로 총량제 시행방안을 만들어 수차에 걸친 관계 전문가 등의 검토회와 공청회를 개최하였고, 지난 9월 15일 오염총량관리제 시행지침을 고시하였습니다.
- 우리 도에서는 이천시를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수질모니터링과 기초 오염원 조사를 실시 중에 있으며, 양평, 광주군에서도 오염총량제를 수용하고자 의견을 밝힌 바 있습니다.
-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환경부와 오염총량관리제를 하고자 하는 시·군과 유기적인 협조로 수질개선과 지역개발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타 수계에도 적용할 수 있는 모범적인 사례를 만들어갈 계획입니다.

<질 의>

- 위원님께서도 인간이 만들어낸 유해물질 중에서 가장 독성이 강하다는 다이옥신이나 퓨란 등이 소각시 발생하므로 이로 인한 환경오염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 변>

-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다이옥신 등은 그 독성이 강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으로는 발생을 최소화하는 것이 최선책이라고 생각합니다.
- 우리 도에서는 쓰레기 소각시 발생하는 다이옥신 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철저한 분리수거가 이루어지도록 지도하고 있으며
- 소각시설의 다이옥신 등의 배출농도를 연2회 정기적으로 측정하는 한편, 주민들의 요구시 수시로 측정하여 이로 인한 환경오염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 또한 신기술도입 희망업체 그리고 환경부 등과 긴밀히 협의하여 신기술 시범사업이 조기에 이루어지도록 힘쓰겠습니다.

<질 의>

- 농업용수, 공업용수 허용 기준치를 검사 항목별로 밝혀주시고 처리후 방류수의 허용 기준치와 이를 농업용수, 공업용수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없다면 그 대책은?

<답 변>

- 농업용수 및 공업용수의 방류수 수질기준

구분	BOD	COD	SS	T-N	T-P
농업,공업용수 환경기준	8이하		100이하		
하수처리 허용기준	20이하	40	20	60	8

- 현재 처리장의 방류수 허용기준은 20ppm이하로 되어 있어 농업, 공업용수 환경기준치보다 높으나 방류후 하천수와 희석된 후 자정작용으로 실제 하천수질은 농, 공업용수로 사용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사료됨

<질 의>

- 수돗물이 음용수로써 적합한지와 이용실태를 조사하였으면 조사자료
- 또한 수돗물을 먹고 있지 않다면 그 이유와 현재의 정수방법이 타당한 지 및 방법에 오류가 있다면 개선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답 변>

- 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WTO에서는 121개 항목의 수질검사를 권장하고 있고 미국은 85개 항목, 일본은 46개 항목을, 우리나라에서도 현재 46개 항목을 검사하고 있으며, 각 정수장에서 생산되어 공급되고 있는 수돗물은 음용수로써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 또한 우리 도 자체적으로 수돗물 이용실태를 조사한 바는 없으나 '98년 8월 갤럽에서 「수도권수돗물음용실태」를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 수돗물을 그대로 먹는다 : 1.4%
 - 끓인 수돗물을 먹는다 : 55.2%
 - 정수기를 사용한다 : 12.7%
 - 생수(먹는 샘물)를 먹는다 : 10.1%
 - 약수(먹는물 공동시설) 등을 이용한다 : 20.6%인 것으로 발표된 바 있습니다.
- 이와 같이 수돗물을 음용하는 인구가 69.3%로 나타난 바와 같이 대다수 주민이 수돗물을 이용하고 있고, 현재의 정수방법 또한 많은 국가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최적의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 그러나 작금에 고도정수처리를 위한 방법으로 활성탄법, 오존법, 생물법, 막여과법 등이 소개·도입되고 있는데 이는 기존의 정수방법 이외에 보조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써 원수 수질형상에 따라 검토될 수 있는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 ※ 현재 운영중인 고도정수처리장 : 동두천시(활성탄법)
 -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예정 : 파주시(Pilot 설치운영중)

<질 의>

- 우라늄과 라돈 등 방사능 오염물질이 충청, 대전지역에서 미국 및 WHO의 제안치보다 20~30배의 양이 검출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우리 도의 대책과 앞으로의 관리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 변>

- 한국자원연구소에서 '98년도에 실시한 전국의 지하수의 먹는 물에 대한 방사능 함유지하수에 대한 수질검사 결과 우리 도에서는 자가수도를 생활용수로 사용하는 지하수 3개소가 라돈의 미국 제안치를 1.7~2.2배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미국의 제안치(Propose)는 규제치나 권고치가 아니며, 단지 국가가 수질기준 설정 과정에서 위해성 평가 및 비용편익분석 등에 대한 연구자료로 이용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 그러므로 미국에서도 먹는 물 중 우라늄, 라돈이 제안치를 초과하였다 해도 행정 조치를 하고 있지 않으며, 라돈의 경우 가스상의 물질로 상온에서 방치할 경우 공중으로 날아갑니다.

<질 의>

- 먹는 물 수질검사항목은 WHO가 121개, 미국은 86개를 실시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45개 항목이며, 또한 간이상수도 8개 항목만을 실시하고 있어 주민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 변>

- 우리나라는 수도법에 의한 먹는물수질기준검사등에관한규칙에 의거 수돗물은 46개 항목(잔류염소포함)과 간이상수도 및 먹는물공동시설(약수터)은 6~8개 항목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현재 WHO나 미국에서의 수돗물 수질검사 항목을 많이 규정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상대적으로 적어 2002년까지 85개 항목을 규정·추진하고 있습니다.
- 간이상수도 및 먹는물공동시설(약수터)은 지하수가 원수로써 수돗물보다 원수의

오염이 적어 농약 등 유기물질의 검사를 제외하기 때문에 외국에서도 검사항목을 8~12개 항목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 의>

- 간이상수도 및 먹는물공동시설(약수터)의 수질검사주기와 항목에 대해서 지적하시면서 특히 학교, 예비군 급식소 등이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정확한 자료와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 변>

- 간이상수도 및 먹는물공동시설은 대부분 지하수 및 오염원이 적은 산지 등에 위치하고 있어 오염진행 속도가 지표수보다 상대적으로 느려 검사횟수는 연4회로 실시하고 있으며, 검사항목은 간이상수도는 8개 항목, 먹는물 공동시설은 1, 3, 4 분기에는 6개 항목, 2/4분기에는 44개 항목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현재 우리 도의 경우 산업화와 도시화로 수원 주변 오염원 증가로 간이상수도 및 먹는물 공동시설의 오염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환경부에서는 검사주기 및 일부항목을 추가하기 위한 수도법 개정을 준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 금년도에는 학교 및 예비군 급식소에 대한 급수현황을 별도 파악한 바는 없으나, '98년도에 학교에 대한 급수현황을 파악한 바에 의하면 총 1,495개 중 상수도보급이 1,091개교이고 지하수를 이용하는 학교는 27%인 404개교이며, 수질검사결과 5개교가 부적합 판정을 받아 상수도 보급 및 끓인물 등을 식수로 사용토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 앞으로 지하수를 이용하는 학교에 대하여는 점차 교육청과 협의하여 수돗물 공급을 확대 공급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나진택 위원('99 행정사무감사 보사환경위원회 '99. 11. 26)

<질 의>

- 운영중인 소각장 주변의 역학조사에 대한 우리 도의 견해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 변>

-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소각장 주변의 역학조사는 국립환경연구원에서는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는 일반적으로 인접 지역공장, 지역난방 등 다매체의 노출에 의한 복합적이며 간접적인 피해를 특징으로 하기 때문에 환경오염과 주민건강간의 관련성 파악이 매우 어려우며
- 일정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환경오염에 의한 건강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많은 비용, 충분한 기간, 많은 전문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기타 대학 등에서는 의견의 회시가 없으나 유선통화 결과 충분한 회시가 어렵다는 답변이었습니다.
- 우리 도에서는 그러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하여 1단계로 시·군 및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토양오염여부에 대한 검사를 실시토록 하고 전반적인 역학조사에 대하여는 지금까지 국내에서 실시한 사례가 없으므로 환경부 및 전문기관 등과 지속적으로 추진방향에 대하여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 의>

- 도내 정수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살균소독제인 이산화염소 용액은 살균력이 염소가스나 액화염소에 비하여 현저히 떨어지며, 동 용액은 영아에게 청색증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 변>

- 우리 도내 정수장에서 사용하는 이산화염소는 살균제로써 차아염소산나트륨에 염산, 황산등을 첨가후 제조한 가스상태(1종)와 안정제를 첨가 제조한 액체상태(2종) 및 기타 살균 소독제가 있습니다.
- '96. 11 ~ '98. 8 G-7 기술개발사업 연구결과에 의하면 살균력은 이산화염소용액(37%)이 염소가스(99.9%)나 액화염소(99.9%)에 비하여 미흡하나 철(Fe)제거 효과는 우수하며, 특히 이산화염소용액과 액화염소를 병행사용시 망간, 폐놀, 조류제거 등 정수효과가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동 용액이 영아에게 청색증을 유발한다는 사항에 대하여는 정수장에 투입시 산화

력을 발휘한 후 대부분 이산화염소이온으로 바뀌는데 이러한 이산화염소이온을 영아가 100mg/ℓ 이상 다년간 섭취하면 청색증이 유발되나, 10mg/ℓ 이하는 무해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사용기준을 0.5mg/ℓ 이하로 규제하고 있어 유해성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오존처리방법에 의한 살균은 살균력의 지속성이 없어 우리나라의 정수장에서는 살균방법의 보조방법으로 일부 사용하고 있으며
- 향후, G-7 기술개발사업 연구결과에 따라 동 용액의 사용할 때는 액화염소와 병행사용을 하도록 하고 수돗물중 철, 망간 성분의 제거에만 사용하도록 환경부에서 관련규정을 개정 중에 있어 그 결정여부에 따라 조치할 계획임을 보고 드립니다.

〈질 의〉

- 옥탑 및 지하의 저수조에서 방청제로 사용하고 있는 인산염과 규산염의 유해성 여부에 대한 견해와 방청제의 사용량이 점차 감소하고 있는 이유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 변〉

- 우리 도내 옥탑이나 저수조에 사용하고 있는 방청제는 수도관의 부식방지 등을 통하여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한 수처리제로써 인산염과 규산염을 주성분으로 하고 있으며.
- 방청제의 성분은 먹는물관리법 제29조 및 제30조 규정에 의거 기준과 규격을 정하고 있으며 인산염과 규산염을 합한 성분의 농도가 10mg/ℓ 이하로 사용토록 정하고 있습니다.
- 방청제의 인산염과 규산염이 인체의 유해성에 대하여는 현재 거론되고 있지 않고 있으며, 방청제의 사용량이 '96년 1,422톤, '97년 1,426톤, '98년 1,127톤, '99년 9월 현재 554톤으로 소량 감소하고 있으나 유해성인지에 대하여는 정확히 파악하고 있지 못한 점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 박명자 위원('99 행정사무감사 보사환경위원회 '99. 11. 26)

〈질 의〉

- 경기도 차원의 지하수 부존량 조사와 이용계획을 수립할 용의가 있는지와 생활용 지하수 중 식수 가능여부를 확인하고 있는지, 정기적인 수질검사 유무, 검사방법 및 기준 등에 대해 물으시고
- '99. 9. 1일 현재 폐공 2,262개소 중에 민간인 소유의 폐공도 포함되는지 여부와 폐공에 대한 연차별 관리현황에 대해서도 물으셨습니다.

〈답 변〉

- 우선 지하수의 부존량은 넓은 의미에서 지하수의 개발가능량과 같은 의미로 볼 수 있으며, 시·도별 지하수 개발가능량은 건설교통부에서 매년 조사를 통해 조사연보를 작성하여 각 시·도 및 시·군에 배포하고 있습니다.
- 우리 도에서는 지난 9월 20일자로 지하수 전담부서가 설치되어 앞으로 우리 도 자체적으로 지하수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하수의 부존량과 개발가능량, 지하수의 체계적인 개발·이용계획을 수립하는 방안에 대하여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 의〉

- 도내 공공기관의 오수정화시설 설치현황과 기준초과 원인, 그리고 도내 위탁관리업·등록업소 현황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 변〉

- 도내 공공기관의 오수처리시설은 건물의 연면적 규모로 산정하여 일반지역 1,600㎡이상, 특별대책지역 800㎡이상일 경우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토록 규정되어 있어 공공기관 중 오수처리시설이 미설치된 공공기관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오수정화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589개소를 점검한 결과 이중 96개소가 위반되었고 기준초과 원인은 시설용량별로 BOD 30~100ppm까지 차등적용하던 수질기준을

'97년 9월부터 용량에 관계없이 BOD 20ppm으로 기준을 대폭 강화하였고

- 공공기관이 대부분 소규모시설로써 전문관리 인력이 없어 운영관리가 미흡했던 것으로 이를 보완코자 금년 8월 관계법을 개정하여 전문관리업 제도를 신설하게 되었으며, 현재 도내 위탁관리업체는 6개소로써 시·군에서 허가를 받아 운영중에 있으며, 앞으로 그 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그리고 생활용으로 이용하는 지하수 중 식수여부를 구분하여 식수용 지하수는 먹는물관리법상 기준을 적용하여 45개항목에 대한 수질검사를 지하수법에 따라 1년에 1회씩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 이와는 별도로 우리 도에서는 매년 상반기, 하반기 2회씩 각 시·군에 4개소씩 지정된 지하수 수질측정망 124개소에 대한 지하수 수질 오염도 검사를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9월 1일 현재 파악한 도내 지하수 폐공 2,262개소 중에는 민간인 소유의 폐공도 포함된 것이며, 이들 폐공에 대하여는 현재 지하수 개발 허가·신고시 원상복구이행보증금 예치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 원상복구이행보증금 : 이용자가 공사비의 10/100 예치
- 2000년부터는 지하수법 제정 이전에 발생한 폐공을 비롯한 모든 폐공에 대한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환경부의 관리지침이 적용될 예정에 있어 폐공에 대한 관리가 한층 강화되어 효율적인 지하수 관리가 가능하리라 판단됩니다.

<질 의>

- 오·폐수 정화처리시설의 성능비교·평가를 위하여 집행된 예산은 얼마인지와
- 각 처리시설별로 외국의 경우와 비교평가한 분석결과와 각 공법의 장단점, 도내 오·폐수정화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대응전략과 도정에 어떻게 반영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 변>

- 국내의 오·폐수정화처리시설의 성능비교와 평가 및 효율적 관리방안추진을 위하

여 '99. 2. 5일 경기개발연구원에 정책과제를 의뢰하였으며, 동 연구자료 작성을 위해 집행된 예산은 없었습니다.

- 자료제출 결과 국내의 오수정화시설 및 정화조를 외국의 시설과 비교평가 분석한 자료는 없으며, 시설별로 장·단점 비교 그리고 새로운 기술자료 등을 제출받았습니다.
- 앞으로 동 연구과제를 토대로 보다 훌륭한 신기술이 오·폐수처리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질 의>

- 경기도내 아파트에 설치한 48개소의 소각시설 중 운영중인 시설과 미승인된 소각시설에 대한 대책과 소형 소각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검사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 변>

-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설치된 소형소각시설은 오염물질의 발생이 적은 가연성 쓰레기를 자체적으로 해결하여 감량하고 무단 노천소각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현재 경기도내 공동주택에 설치된 소형소각시설은 48개소이나 이중 정상가동 되는 곳은 5개소로 조사되고 있습니다.(부천 1, 남양주 1, 화성군 3)
- 이렇게 가동률이 저조한 이유는 소형소각시설 인접 주민들이 환경오염이 우려된다는 의견에 따라 주민 자체적으로 가동을 중지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 우리 도에서는 '97년 다이옥신 파동이후 아파트 등의 소형 소각시설 설치를 억제하고 있었으며 지금까지 시간당 100kg미만인 소형소각로는 대기환경보전법에 해당되지 않아 배출오염물질 측정을 하고 있지 않고 있었으나
- 금년 10월 16일부터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되어 앞으로는 시간당 25kg미만의 소형 소각시설은 설치를 금지토록 하였으며 25kg이상인 소각시설은 대기환경보전법

에 의거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득하도록 하였고 오염물질의 배출농도를 연2회 이상 측정토록 강화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질 의>

- 팔당호 수질오염도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이유가 무엇이며, 오·폐수 발생량 중 처리량은 17만 7천톤에 그치고 있는데 나머지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으며,
- 오·폐수 발생량 전량 처리를 위해서는 환경기초시설이 얼마나 필요한지 소요 기간과 재원을 밝혀달라고 하시면서 100% 처리까지 잔여기간 동안의 관리계획과
- 유입지천의 BOD처리를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유입지천 COD를 밝혀달라고 하셨습니다.

<답 변>

-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팔당상수원 수질오염도가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이러한 원인은 팔당상류지역에서 1일 오·폐수발생량이 32만여톤 발생되고 있으나 현재 가동중인 환경기초시설은 17만 7천여톤으로 잔여량은 처리하지 못하고 방류되는 것이 그 원인이라고 하겠습니다.
- 오·폐수를 전량처리하기 위해서 2003년까지 12개소 8만 5천톤의 환경기초시설 건설을 추진중에 있으며
- 마을단위별로 소규모 오·폐수를 병행 처리하기 위하여 합병정화조 설치를 추진중에 있으며, 이를 통하여 BOD를 효과적으로 줄여 피해를 최소화 해 나갈 예정입니다.
- 하천별 COD는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질 의>

- 폐수배출시설에서 오염물질을 배출한 뒤에 지도·단속은 비효율적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오염원의 사전방지를 위한 자동계측기(TMS) 등의 첨단 통신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답 변〉

- 폐수배출시설의 사전감시에 필요한 자동계측기시스템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 현지 우리 도내에 자동계측기는 팔당상수원 수계에 21개소(이천 6, 용인 12, 광주 3)와 평택호 수계에 14개소(수원 6, 평택 4, 오산 4)등 총 35개소가 설치되어 있고, 운영중인 시·군에 상황실을 설치하여 감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 TMS의 설치의무가 법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시설비 및 운영비가 과다 소요되어 업체에서 적극적인 설치운영을 기피하고 있어 제도화를 위한 관계법규 개정을 건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참고사항

- 상황실 설치 : 3억원 소요
- 자동측정기(1대) : 5천만원 소요

〈질 의〉

- 위원님께서서는 시·군의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실적과 적발비율이 교통안전관리공단 차량검사소와 비교하여 크게 미달하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 이러한 적발결과와 원인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 변〉

- 먼저 자동차배출가스 단속체계를 말씀드리면 도에서는 비디오단속을 중심으로 한 상설점검반을, 시·에서는 노상단속을 중심으로 한 수시점검반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주요 업무보고서상 단속실적은 시·군을 포함한 실적입니다.
- 현재까지 도 및 시·군에서의 자동차 배출가스 수시단속은 대기환경보전법 제36조에 의한 운행차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적용하며 경유사용 차량은 매연만을, 휘발유 사용 차량은 일산화탄소, 탄화수소만을 측정하여 왔습니다.
- 그러나 교통안전공단에서의 정기검사시에는 이 부문 이외에도 동법 제37조의2에서 공기과잉률 검사항목을 추가 측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이 결과 검사차량의

적발률 중 85%가 공기과잉률 위반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 아울러 2000년부터는 수시단속시에도 공기과잉률 점검항목을 추가하여 측정하도록 금년 10월 22일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 도에서도 각 시·군에 공기과잉률 점검이 가능한 장비를 구비토록 지시하는 등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 박명자, 김주삼 위원('99 행정사무감사 보사환경위원회 '99. 11. 26)

〈질 의〉

- 관부식 방지를 위한 신기술이 개발되었는데 누수방지를 위하여 활용하고 있는지 여부와 누수발생 원인별 현황과 남양주, 연천, 동두천, 과주시가 다른 시·군보다 누수율이 높은데 그 원인과 누수로 인한 손실금액에 대하여 물으셨으며
- 김주삼 위원님께서 상수도 누수로 인한 손실금액이 640여원에 달한다고 지적하시면서 상수도 정책도 누수를 줄이는 방안으로의 정책 전환이 필요하며 누수율이 20%가 넘는 시·군의 특별한 대책이 필요한데 도의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 변〉

- 관부식 방지를 위한 신기술보급 현황은 현재 방청제 도포 등의 방법 등이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기술과 산업발전에 따라 관제조방식의 신기술 개발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앞으로 다방면에서 활발히 이용되리라 생각합니다.
- 누수발생 원인으로는 관노후, 과다수압(적정수압 1.5~4.5kg/cm²), 타 공사로 인한 관로파손, 도로 과하중 및 지반부 침하 등의 원인으로 누수가 발생하며 원인별 발생비율은 관노후 74.3%, 타 공사 6.6%, 도로 과하중 및 지반부등 침하 3.4%, 동파 4.3%, 이상수압 4.1%, 자재불량 및 시공불량 2.1%, 기타 4.9%로 나타났습니다.(우리 도 자체조사결과)
- 남양주, 연천군 등 10개 시·군이 누수율이 20%를 상회하는데 그 원인은 연천군 등 대부분의 시·군에서는 점차 누수율이 감소되고 있으며 '97년대비 '98년에 누수

율이 증가한 구리시 등의 경우에는 강북수원지 통수로 기존 상수도과 수압차로 인하여 누수율이 높아졌으며 누수로 인한 '98년도 손실은 115,011천톤에 529억여 원입니다.

- 이러한 누수로 인한 손실을 저감하기 위하여 금년도에 347억원을 투입하여 노후 관교체 198km, 누수탐사 1,875km, 계량기교체 63천개를 교체하였으며, 지하매설물 전산화, 누수탐사장비 현대화, 구역계량 실시, 누수탐사공무원 전문교육을 실시하여 누수율 저감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박명자, 김주삼, 이상락 위원('99 행정사무감사 보사환경위원회 '99. 11. 26)

<질 의>

-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 감량기기 중 공동주택에서 미가동 대수가 많은 이유와 미가동기기에 대한 조치사항, 감량의무 사업장 중 미가동 사업장에 대한 처리사항, 음식물쓰레기 처리기를 가장 많이 설치한 업체와 모델명과 이러한 모델의 하자여부
- 많은 감량기기가 미가동되어 예산낭비를 초래했는데 감량기기를 제작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나 경기도의 체계적인 자금지원으로 기술향상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시면서 음식물쓰레기처리 활성화 가동팀을 구성하여 활성화시켜야 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 변>

- 음식물쓰레기 감량기기 중 공동주택에 미가동 대수가 많은 이유는 설치 초기 기술부족으로 인한 기기 운영비용이 과다했고, 또한 기기 설치주변 주민들의 악취로 인한 반발로 가동이 가능한 기기도 대부분 중단되어 상대적으로 처리비용이 저렴한 공공처리시설이나 가축농가 등에 위탁처리되고 있으며, 감량의무사업장 중 감량기기가 미가동되고 있는 업소는 시·군별 음식물쓰레기관련조례에 의거 가축농가 등에 민간위탁처리되고 있습니다.

- 우리 도에 음식물쓰레기 감량기기를 최다 설치한 업체는 군포시 당정동 소재 (주)그린파워로 의정부시 감량의무사업장에 모델명 HS 3.5 50대를 설치가동 중에 있

으며 자체 기기 결함보다는 이용자의 사용미숙으로 인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우리나라 음식물쓰레기는 외국과 달리 염도와 수분함량이 높아 기술적인 어려움이 사업초기에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독자적으로 외자유치를 통한 광역화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고
- 이제 동 사업이 많은 어려움 속에 가시화 되고 이와 병행해 감량기기 기술부분은 활성화동팀과 용역팀을 구성하여 기술향상을 위해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